

2002년 전자산업

통상환경 전망(Ⅱ)

- 본회 국제통상팀 -

I WTO 뉴라운드

II 한·일 FTA 관련 검토

III 한·미 FTA 관련 검토

III. 한·미 FTA 관련 검토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전개과정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는 1989년 美 국제 무역위원회 (USITC)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동 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 중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꼽았으며 이들 국가 중 싱가포르는 이미 무역자유화를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도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대만과의 FTA는 양국간 미수교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세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FTA 대상국임을 밝혔으나, 당시 한국의 높은 반미 감정으로 양국간 협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우택(1986)이 Armington(1969)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1989)이 공동 발표한 산업별 영향분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FTA에 관한 논의는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는데, 당시 미국은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한·미 FTA를 이용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양허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FTA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후 한국이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자, 미국측은 한·미 FTA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1999년 6월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또한 2001년 1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미 세계회의는 양국간 BIT와 FTA를 조기에 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00년 12월 美 상원재무위원회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 한·미 FTA의 예상 포괄범위 및 쟁점에상분야

1) 상품교역부문

|| 관세 ||

관세인하 및 철폐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협상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미 FTA 체결시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를 및 관세철폐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의 절대적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관세철폐시기를 설정하는 일과,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일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관세철폐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MFN 세율을 인하할 때 FTA 세율을 자동 인하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 원산지규정 ||

FTA의 원산지규정은 협정당사국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이 협정에 의거한 관세·비관세상의 특혜대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NAFTA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추진시 원산지규정의 판정기준은 세번(Harmonized System)의 변경을 근간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과 엄격도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 NAFTA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기준 60%, 순생산비 기준 50%의 현지조달비율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통관절차 ||

통관절차는 미국이 한·미간 통상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이라는 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이슈로는 수입업자가 FTA 체결로 관세감면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환급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세 환급 허용기간(통상 1년),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선의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정허용기간을 설정하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 농산물 분야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양국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분야가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예상되며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결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방하는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경우, 反美 감정으로 인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불투명해지므로, 미국도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기존 WTO 농산물 양허안에 기초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WTO 뉴라운드에서 진행될 다자간 농산물협상과 연계하여 미국에 추가적으로 특혜를 주는 형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WTO 농업협정 아래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허용하는 문제, 농업의 非교역적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 등도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 에너지 부문 ||

에너지 부문을 개방하는 분야는 에너지 및 기초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에너지 관련 업종의 공공 독점을 인정하는 문제, 기타 에너지 관련 업종의 투자

자유화가 주요 내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는 양국간 관세철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NAFTA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과도기간에 한해서만 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미국보다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한국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몇년동안은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허용할 것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은 관세철폐이행기간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자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가능한 적용기간을 짧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단계별 철폐를 근거로 2005년 까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쌀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수량제한 조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 및 서비스교역 부문

미·캐나다 FTA, NAFTA 등은 UR 타결 이전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이는 서비스산업을 개방하는 것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UR 협상과, OECD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는 부문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으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투자자유화와 서비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에 이르렀으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IMF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과 다름이 없어 크게 쟁점으로 부각될 사항은 없으나,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개방의 정도가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

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타 부문

|| 표준·적합 ||

GATT/TBT 수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NAFTA의 기술표준을 검토하여 국내제도를 객관화·명료화하고, 표준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민간기관에 이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정부조달 ||

GATT 정부조달협정의 양허수준에 비해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해득실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며 국내업체도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요 분석요소로는 정부조달 대상기관(지방정부 포함 여부), 양허 하한선(WTO GPA 양허안과 합치 여부), 기술사양의 정의(운영 방식, 적합판정 절차 요건의 포함 여부), 정부조달에 포함되는 서비스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 지적재산권 ||

NAFTA 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과 국내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WTO/TRIPs 규정 수준 이상으로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과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 추가가능 여부, 지적재산권 분쟁발생시 분쟁절차에 의뢰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주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반덤핑 ||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주로 반덤핑 제소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호주-뉴질랜드간 CER
에서와 같이 FTA 협정문에 반덤핑 상호 적용 배제
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
르 도하 WTO 각료회의 前, 한국, 중국 등은 반덤
핑을 협상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FTA에서 반덤핑 상호 적용 금지가 조문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노동기준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점진적으로 보
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자국의 무역과 관련한 각종 법규, 무역협정, 무역정
책에서 노동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였다.
한·미 FTA를 추진할 경우 한국의 노동기준 중 문
제가 되는 핵심 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
섭권의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처럼 국제기준
보다 미진한 노동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거나, 기타 이유로 한국의 노동
기준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개발정상회의, ILO에서 확인한 핵심노
동기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까지도
핵심노동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FTA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보호 ||

NAFTA 규정과 국제환경보호조약간에 상충성이
발견되면 국제환경보호 조약이 NAFTA에 우선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환경보호조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환경문제가
중요했지만,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미국과 떨어
져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문
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기
후변화협약에 개도국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의
무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주요 고려사항

1) 통상마찰의 해소를 통한 수출증대

한·미 FTA의 경우에도 한국이 거대미국시장에
진출하는데 통상마찰의 주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FTA를 창설한 이후에는 종래에 일방적으로 취한
무역조치(301조 또는 수퍼301조) 대신에 쌍무적 분
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
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이 전망된다.
따라서 통상마찰이 해소되면 거대한 미국시장에 안
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경합하
고 있는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 다
른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
이 누리는 혜택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 극대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서 미국의 무역장
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므로 미국산 상품이 한국
수출품으로 전환되는 무역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한·미 FTA로 무역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유
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가 창설되면 역외국의 입장에 처한 일본은 한국을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對한국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면 고용창출, 선진기술의 이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이며, 한국은 아시아의 성장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해 국내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게 되면 비교 열위산업에 방출되는 유휴생산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비교우위산업에 투입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3)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최대의 걸림돌은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며, 국내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초우량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고도기술 및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한국의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한·미 공조체제의 공고화

미국과의 FTA 체결은 기존 안보협력체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가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크며 이는 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확대는 미 업계와 업계의 로비를 받은 정계가 한반도 안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 체결로 주요 교역국들이 반감을 표시할 수 있으나 한국은 한·미 FTA 외에도 일본, 중국, ASEAN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FTA를 추진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미국 외 다른 교역국들이 우려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한·미 FTA의 경제적 예상효과

1) 총체적 효과

||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과의 FTA 체결은 국민후생의 개선(연 40억 불 수준), 실질소득의 향상(1%수준)과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연간)

	전품목 원전자유화	농업분야 제외	농업 50%, 제조업 100% 자유화
후생수준(억 달러)	48	33	42
실질소득(%p)	1.47	0.78	1.10
물가수준(%p)	-3.11	0.22	-0.07

※ 주: 완전경쟁 CGE모형을 사용한 추정치임.

자료: 왕윤중·정인교(199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미국과의 FTA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최인범·제프리 쇼트(2000)에 의하면 한미간 FTA체결시 미국의 무역장벽이 이미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보다는 미국의 대한수출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대미수입증가분 중 일부는 대일수입을 대체하는 무역전화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통상

〈한·미 FTA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변동율)

지역	완전 개방				농업제외			
	증기효과		장기효과		증기효과		장기효과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호주·뉴질랜드	-3.8	-14.3	-0.4	-12.8	-3.2	0.4	-1.5	1.4
일본	0.6	-3.3	3.2	-1.7	-3.3	-4.0	-2.0	-3.3
중국	1.0	-2.0	3.7	-0.2	-3.1	-0.2	-1.7	0.7
아세안	-2.1	-8.9	0.7	-7.2	-2.9	-2.4	-1.4	-1.4
미국	26.2	46.1	30.3	49.4	23.8	22.1	25.5	23.3

※ 자료: 최인범·제프리 쇼트(2001)

〈한·미 FTA의 후생효과요인〉

(단위: 백만 달러)

요인	완전 개방		농업제외	
	증기효과	장기효과	증기효과	장기효과
미국				
배분효율	1.8	501.9	94.2	363.5
교역조건	3,781.4	2,733.6	1,438.2	866.6
성장효과	0.0	5,658.6	0.0	2,956.0
기타	0.2	0.5	0.0	0.0
합계	3,783.4	8,934.6	1,532.4	4,186.1
한국				
배분효율	2,364.1	3,902.3	266.5	879.9
교역조건	1,509.5	-120.1	1,445.9	646.4
성장효과	0.0	7,164.3	0.0	3,398.5
기타	-44.0	-85.8	-0.2	-1.4
합계	4,099.6	10,860.7	1,712.2	4,923.4

※ 주: 1995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등가 변동치

자료: 최인범·제프리 쇼트(2001)

악화되지만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FTA 경제후생효과요인 분석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후생개선이 교역조건 개선, 미국의 후생증대는 주로 한국에 대한 수출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후생증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증대(교역조건 개선)가 아닌, 수입증대와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의한 한국경제내의 경제적 비효율이 제거

(배분효율)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수입경쟁산업(import competing industry)의 시장퇴출, 실업, 기업도산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 상당한 사회적 구조조정 비용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2) 산업별 효과

가장 이득을 보는 산업은 한국의 의류와 섬유산업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이 이들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내에서 이들 산업에 부과

하고 있는 고관세(16~34%) 철폐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금속제품, 수송기계, 전자제품, 기계류 등은 3% 미만의 생산규모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경우 생산규모가 최고 44%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하의 산업별 생산변동률〉

산 업	생산변동률(%)
농 업	-4.40
광 업	0.05
식품가공업	5.18
섬 유 류	13.68
의 류	29.30
종이 / 목재	1.27
석유 / 화학	1.92
금 속 제 품	-2.89
수 송 수 단	-2.81
전 자 제 품	-2.83
기계/장치산업	-2.45
기타 제조업	-0.29
서 비 스	0.16

※ 자료 : 정인교(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 전산업(농업부문 포함)의 관세 100% 인하시

5.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망

1) 미 행정부의 대한인식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칠레·싱가포르 보다 시장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아직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가로 간주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기 이전에 무역장벽을 더욱 완화하고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중간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미 행정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부시 행정부 들어 미 행정부가 발표한 對韓 통상현안에 대한 보고서들을 보면 이와 같은 미 행정부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데 2001년 3월 6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백서(the President's 2000 Annual Report on the Trade Agreement Program)에서 한국은 금융분야 등에서 약속한 개혁의 이행에 진전이 있었으나 주요 산업의 구조변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교역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1년 3월 30일 발표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2001 National Trade Estimate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에서도 일본, EU, 중국에 이어 22쪽에 달하는 많은 지면을 한국시장에 대한 폐쇄성을 지적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와 은행, 기업간의 불건전한 유착 고리를 끊는 노력을 통해 보다 개방되고 시장중심의 경제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개혁의 동력이 둔화되었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금융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시장경제이행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자동차 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외에도 USTR은 2001년 4월 30일 '수퍼 301조' 보고서 (Identification of trade expansion priorities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116)에서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시장의 폐쇄적 관행과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를 미국의 교역혜택 확대를 위해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할 무역장벽 사례로 지적하였으며 또 같은 날 발표된 '2001 Special 301 Report'에서는 한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유럽, 대만 등 15개국과 같이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미국의 6대 수출시장이나 이러한 양국관

제가 미국 행정부 내에 한국의 중요성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는 USITC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2001년 9월 발표했고 상원에서 법안의 형태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 통상관련 부처내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미 의회의 대한 시각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미 의회는 전통적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한국시장의 높은 무역장벽에 대해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면서 한국이 덤핑수출을 통한 불공정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수시로 의회의 결의, 입법안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1년 들어 우리나라의 철강, 반도체, 자동차 시장 등에 대한 개방압력과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 의회에는 현단계에서 한미 FTA 체결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1년 들어 한국과 관련하여 미 상·하원에서 제출된 결의, 입법안들을 보면 이러한 의회의 對韓 인식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 현대전자 지원에 대한 상원 결의안 ||

2001년 2월 13일 상원의 Larry E. Craig 공화당의원은 현대전자에 대한 부당한 회사채인수에 대한 결의안(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s unlawful bailout of Hyundai Electronics, S. Con. Res 10)을 재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Craig 상원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전자에 대한 21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 인수조

치는 IMF 및 미 재무부와 맺은 한국정부의 시장개입금지 약속과 WTO의 보조금 협정, 미국의 상계관세법 등을 위반하는 불공정무역관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요 대미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며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한국은 IMF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Craig 상원의원은 미 재무부와 상무부 및 USTR에 대해 부당한 지원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국 자동차 수입장벽 제거 공동결의안 ||

2001년 5월 24일 미 상원과 하원은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장벽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결의안 (Expressing the sense of the Congress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s ongoing practice of limiting United States motor vehicles access to its domestic market S. Con. Res. 43)을 상원재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상원의 Carl Levin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세계 자동차 수출대국이면서도 수입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진국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비난하였으며 결의안을 통해 미 의회는 한국정부가 실질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해 미국 자동차와 부품의 한국내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同 결의안은 USTR, 상무부 등이 한국의 수입차 시장 진출에 있어서 미국이 당하고 있는 불공평한 대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에 대해 감시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6월 한미 자동차 실무협상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시장개방에 관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출되었다.

|| 철강산업 수입규제 관련 입법 ||

2001년 1월 3일 James A. Traficant 민주당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미 철강수입 급증에 대응해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同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러시아, 브라질로부터 철강수입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이들 철강 수출국들이 철강수입에 관한 국제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주장하면서 철강수입을 모니터링할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철강수출국들이 협약을 지키도록 시행한 조치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2001년 3월 1일 하원의 Peter J. Visclosky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철강산업 재건법(Steel Revitalization Act, H.R 808)을 하원무역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동 법안의 내용은 대통령이 수입쿼타, 관세, 또는 다른 조치들을 동원하고 외국과 자율적인 철강수출협정을 체결해서 수입철강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철강수입 물량이 1997년 이전 3년간 평균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철강소비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이전 3년간 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 법안

|| 법안의 제안배경 ||

2001년 5월 23일 Max Baucus 상원의원(민주당, 몬타나주)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법안 부여에 관한 법안을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 부시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취지는 미국이 무역

자유화 협상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동안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미국 수출업자들이 세계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특혜조치를 활용하는 외국 경쟁자들에 의해 해외시장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법안(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of 1999, S 1869)은 1999년 11월 5일 Max Baucus의원에 의해 이미 제안된 적이 있으나 다시 제출되었으며 당시 Baucus 의원은 한국을 비롯해 칠레(S.1871) 및 싱가포르(S.1870)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법안을 동시에 제출 하였다.

당시 법안들에 포함되었던 칠레와 싱가포르와는 현재 미국이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Max Baucus 의원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호주나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보다 문제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은 뉴질랜드나 호주에 비해 무역장벽이 많고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미국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쇠기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목축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무역을 규제하는 관행들이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한국정부의 지원은 미국 아이다호주와 유타주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ax Baucus 의원은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과의 FTA가 양국간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마찰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의 소고기에 대한 고관세 및 경쟁제한적 관행,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및 세금부과,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관행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이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FTA 협상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방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의 경제·정치적 개혁을 담보할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

同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미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조사결과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협상을 위한 신속협상 권한의 부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먼저 한국에 대한 의회의 조사 결과 및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수출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쌍무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크게 촉진시켰다.
- 교역확대와 경제성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최종목적은 아니다. 교역확대와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해야 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높은 노동기준을 조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 국내 환경법이나 노동법을 완화해 자국 무역을 촉진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
- 국내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에 대해 무역·투자장벽을 제거하고 자유기업을 조장하는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빈곤을 없애고 사회적·환경

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WTO의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참가 해 왔다.
- 한국은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WTO 통상장관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위의 조사결과는 1999년 법안(S.1869) 제출 당시 의회 조사내용과 동일하나 다른 점은 ?항의 환경·노동부문이 추가된 것이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13개 분야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당시 제출되었던 법안 내용과 동일하고 이들 항목들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 농산물과 제조업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과 內國民 대우
- 한국 원산지와 미국 원산지에 대한 규정
- 무역특혜를 보장하면서 무역, 무역데이터 수집을 촉진하는 관세제도 운영
- 과학적이고 비차별적인 동식물검역과 기술표준
- 정부조달
- 일시적인 수입증가로 위협받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內國民 대우
- 서비스 교역에 대한 내국민대우
- 지적재산권 보호
- 법 및 규제제도의 투명성
- 전자상거래 촉진 조치
- 무역관련 환경조치
- 국제적인 수준의 주요 노동기준 준수

USITC의 한·미 FTA 보고서 주요내용

USITC(2001)는 지난 9월 초 한·미 FTA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SITC 보고서는 모두 5개 Chapter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양국간 경제관계와 교역장벽, 양자간 교역장벽을 제거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등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에게 중요한 교역파트너이며, 2000년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이면서 제2의 수입국가인 반면, 한국은 미국의 8대 수출국 그리고 6대 수입국이다.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며, 총교역에서 농산물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제조업에 대한 교역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총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0%에서 2000년 14%로 낮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의 흑자 규모는 113억 달러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임에 따라 향후미국과 한국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CA 지수를 이용하여 양국이 FTA를 체결할 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로는 농산물, 무기화학, 화공, 발전장비, 승용차 등을 들고 있다. 미국이 승용차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섬유, 의류, 여행용구, 고무제품, 철강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유사, 사무용기기, 전산장비(반도체 포함), 정보통신기기, 특수차량, 인조고무, 플라스틱 등은 양국이 상호간에 교역(산업내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증대 예상 품목>

미국의 비교우위 품목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	산업내무역 활성화 품목
동식물성 유지, 과일류, 곡류, 시리얼, 육류, 가죽, 담배, 화학재료, 향수, 화장품, 종이·펄프, 무기화학, 기계류, 수송장비, 조명기기, 과학장비 등	의류, 약세사리, 철·철강, 금속제품, 고무제품, 섬유사, 섬유 및 관련 부품, 여행용구 등	특수차량, 인조고무, 플라스틱, 전자기기, 사무기기, 전산장비, 정보기기, 음향기기, 섬유 등

주요 산업별 현황을 양국의 교역구조와 대비시켜 논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SITC 보고서에서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상원(보커스 의원)이 USITC에 조사를 요청하였을 때, 농업에 대한 분석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을 당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쌀 소비가 감소하고(지난 5년간 10%), 최소시장점근내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동남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은 FTA로 인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도 쌀을 수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농품 중 우유분말, 치즈, 아이스크림 등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한국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초지, 사료, 국내의 내수시장 규모, 유통 및 인프라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에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현재는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가 20% 증가하여, 향후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였다(2000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80,000 MT으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57%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한국

통상

은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생 및 검역, 승인, 검사, 광고, 포장 등에서 한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지적하였다. 1998년 타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록(MOU)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산차에 비해 수입 자동차에 한해 불리한 내국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미 FTA의 부문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미국의 대한민국 수출	한국의 대미국 수출
쌀	0,0	0,0
육류	716	0,0
과일, 채소	69	0,0
낙농제품	207	15
기타 농산물	9,432	178
지하자원	91	1
섬유 및 의류	163	7,008
미네랄, 금속제품	396	383
기타 제조업	8,021	2,887
서비스	8	-209
총 계	19,175	10,262

* 주: 협정 체결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의 추정치임.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54% 증가하고, 수입은 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FTA 체결 4년 후 미국은 농산물이 104억 달러, 공산품이 87억 달러 등 총 192억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에 있어서는 섬유 및 의류가 70억 달러, 기타 제조업이 29억 달러로 총 103억 달러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분야는 농산물, 섬유 및 의류로,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을 200% 이상 수출하고, 한국은 미국으로 섬유 및 의류 수출을 125%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FTA 체결로 각각 0.23%와 0.69%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96억 달러와 39억 달러에 해당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 업종에 따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는데, 섬유 및 의류 분야는 18%(금액으로는 125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분야는 5%(88억 달러) 정도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섬유 및 의류 분야는 1% 위축되는 반면, 농업 부문의 생산은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규모가 큰 미국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부문별 생산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미 국	한 국
쌀	4	-300
육류	1,006	-24
과일, 채소	99	-136
낙농제품	641	-137
기타 농산물	13,636	-8,222
지하자원	-39	-85
섬유 및 의류	-3,678	12,525
미네랄, 금속제품	-108	-1,217
기타 제조업	584	-1,519
서비스	22,857	7,352
총 계	35,002	8,237

* 주: 협정 체결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의 추정치임.

한편, 양국간 FTA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개선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산물에 대한 이중 관세제도와 수입절차, 검사, 검역, 시험 등 통관과 관련된 사항이 개선됨으로써 미국 농산물이 대한민국 수출을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는 미국산 영화가 한국시장에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쿼터가 철폐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USITC 연구진은 한·미

2002년 전자산업 통상 환경 전망

FTA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관세

철폐는 물론, 쿼터, 통관, 정부조달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산업 對미수출입/수지 및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 전자산업 對미 수출

(단위: 천불, %)

수 출	1999	증가율	2000	증가율	2000.10누계	2001.10누계	증가율
전 체	29,474,653	29.2	37,610,630	27.6	30,696,749	26,120,257	- 14.9
산업용	6,424,295	94.2	8,477,617	32.0	6,859,222	5,978,100	- 12.8
가정용	1,450,747	31.5	1,850,933	27.6	1,599,880	1,471,054	- 8.1
전자부품	6,619,765	11.4	8,785,395	32.7	7,402,997	3,532,585	- 52.3
일반부품	985,833	41.9	874,946	- 11.2	722,239	554,858	- 23.2
반도체	5,633,932	7.4	7,910,449	40.4	6,680,758	2,977,727	- 55.4
소 계	8,860,875	73.6	11,203,496	26.4	9,181,341	8,004,012	- 12.8
전자산업계	14,494,807	40.0	19,113,945	31.9	15,862,099	10,981,739	- 30.8

■ 전자산업 對미 수입

(단위: 천불, %)

수 입	1999	증가율	2000	증가율	2000.10누계	2001.10누계	증가율
전 체	29,474,653	22.1	29,241,628	17.3	24,775,027	18,862,844	- 23.9
산업용	6,424,295	48.1	4,857,694	55.6	4,140,877	2,914,615	- 29.6
가정용	1,450,747	43.5	212,963	19.9	181,994	171,091	- 6.0
전자부품	6,619,765	24.3	7,667,587	3.2	6,458,217	4,026,698	- 37.7
일반부품	985,833	8.2	460,719	15.3	391,561	322,027	- 17.8
반도체	5,633,932	25.4	7,206,868	2.5	6,066,656	3,704,671	- 38.9
소 계	8,860,875	42.2	5,531,376	49.5	4,714,432	3,407,733	- 27.7
전자산업계	14,494,807	30.7	12,738,244	18.7	10,781,088	7,112,404	- 34.0

■ 전자산업 對미 무역 수지

(단위: 천불, %)

수 지	99	2000	2000.10누계	2001. 10누계
전 체	4,552,309	8,369,002	5,921,722	7,257,413
산업용	3,302,343	3,619,923	2,718,345	3,063,485
가정용	1,273,191	1,637,970	1,417,886	1,299,963
전자부품	- 808,377	1,117,808	944,780	- 494,113
일반부품	586,081	414,227	330,678	232,831
반도체	- 1,394,458	703,581	614,102	- 726,944
소 계	5,161,615	5,672,120	4,466,909	4,596,279
전자산업계	3,767,157	6,375,701	5,081,011	3,869,335

통상

〈對日 상위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순위	코드	품목명	2000		2001(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21110	디지털식집적회로	7,669,565	42.1	2,835,248	-56.3
2	712130	휴대용전화기	2,362,819	67.9	2,547,934	48.0
3	714110	소형 및 개인용컴퓨터	1,672,255	45.2	813,460	-43.5
4	71427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981,528	-3.8	630,771	-20.8
5	714290	컴퓨터 부분품	1,026,807	25.1	445,649	-49.0
6	714230	기타의 보조기억장치	627,804	63.5	366,385	-29.4
7	733230	전자렌지	477,608	2.8	348,881	-18.2
8	731900	VTR	389,274	58.7	323,961	-5.6
9	733130	에어콘	245,837	51.1	199,368	-10.0
10	714240	프린터	190,055	162.4	139,777	-6.9
11	724300	PCB	252,954	46.0	136,851	-31.8
12	732200	라디오카세트	186,384	240.4	131,404	-8.5
13	714220	HDD	134,999	-23.7	125,133	10.8
14	732410	일반컴포넌트	157,306	32.6	116,137	-14.5
15	71299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261,123	5.3	99,473	-55.7
16	725220	비디오테이프	120,864	-11.3	91,657	-10.9
17	71232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63,226	-11.8	88,730	57.5
18	731100	칼라TV	58,064	-29.5	86,793	78.4
19	721600	실리콘웨이퍼	70,990	51.0	72,279	29.5
20	712390	수상기	68,539	51.0	64,070	16.2
21	725910	직류전동기	103,103	2.8	61,185	-33.5
71	714250	음극선관단말기	256,287	-18.5	52,229	-78.2
72	714300	소프트웨어	67,722	83.7	51,582	-1.9
73	712310	텔레비전카메라	65,982	41.5	51,565	-4.8
76	713690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	69,685	80.6	49,331	-9.8

〈對日 상위 20대 수입품목〉

(단위: 천불, %)

순위	코 드	품 목 명	2000		2001(1월~10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721110	디지털식 집적회로	6,817,697	1.3	3,488,329	-39.3
2	711390	기타 반송통신기기	821,865	141.3	419,750	-42.2
3	714120	중형 및 대형 컴퓨터	507,168	81.7	270,020	-38.1
4	719190	기타 전자계측기	321,108	33.4	185,889	-32.0
5	714290	컴퓨터부분품	333,120	53.8	185,018	-36.5
6	714300	소프트웨어	314,180	60.9	180,565	-30.9
7	714110	소형 및 개인용 컴퓨터	162,252	38.7	102,373	-23.6
8	711590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195,750	5,205.5	90,397	-37.7
9	71299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167,207	-13.3	86,681	-40.8
10	713990	기타 응용기기 및 부분품	106,739	67.2	73,911	-17.1
11	713690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	88,957	45.2	71,723	-0.6
12	732410	일반컴포넌트	80,005	-14.1	70,870	3.0
13	714230	기타의 보조기억 장치	110,957	73.0	65,858	-29.0
14	713390	기타 사무자동화기기 및 부분품	160,958	136.9	60,515	-58.5
15	711310	광전송장치	88,008	52.2	60,497	-27.0
16	711990	기타 유선통신기기용부분품	206,678	112.3	53,370	-71.3
17	724200	커넥타	71,179	14.3	45,793	-24.8
18	714220	HDD	72,887	178.1	43,144	-28.8
19	721490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61,054	66.0	43,065	-8.7
20	712510	레이다, 항행용 무선기기	13,987	33.1	41,672	236.58